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계선신고 대상 선박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 확대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9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계선신고 대상 선박 확대	3
2. 예선·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 확대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4.
3. 회 부 일 : 2025.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계선 신고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또한,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1. 계선신고 대상 선박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관리청에 계선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선박을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20톤 미만의 선박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u>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u> 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u>선박</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한정하여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받은 관리청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되, 계선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최근 부산항 내 방치선박, 장기계류 선박***이 155척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20톤 미만의 선박도 포함되어 있고 그 비중은 5.2%(8척)²⁾임. 이처럼 선박의 방치 및 장기계류가 지속될 경우 선체의 노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로 인하여 선체 침수나 기름 유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20톤 이상의 선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20톤 미만 선박의 장기계류·방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무역항 장기계류선박 현황]

(단위 : 척, 2024년 12월 기준)

구분	계	계선신고 선박	방치선박* ³⁾ (고위험 선박)	감수보존 선박 ⁴⁾	장기계류 선박 ⁵⁾
부산	176	17	13(7)	4	142
인천	18	8	10	0	0
여수	4	1	-	1	2
마산	1	1	-	-	-
울산	15	15	-	-	-
동해	2	2	-	-	-
군산	17	16	1	-	-
목포	13	-	5	1	7
포항	1	-	-	-	1
평택	1	-	1	-	-
대산	-	-	-	-	-
계	248	60	30(7)	6	152

※해양수산부

2) '24년말 기준 파악된 방치·장기계류선박 중 20톤 미만 선박은 총 9척이며, '24년 기준 무역항을 이용한 선박(내항선) 중 20톤 미만 선박은 99척임

3) 방치선박 : 계선신고 등 행정행위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여 6개월 이상 미운항 중인 선박

4) 감수보존 선박 :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선박

□ 개정안은 이에 계선 신고 대상을 총톤수 20톤 이상에서 20톤 미만의 선박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게 되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관리청의 항만질서 유지가 더욱 용이하고, 해양 환경의 오염 방지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항만법」 제41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 등에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⁶⁾ 항만시설 사용허가 대상 선박은 총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선박이 받도록 하고 있어, 계선 신고 적용대상 확대는 이러한 항만질서 유지 적용대상과 일치된다고 보여짐.
- 또한, 개정안에 의할 경우 ‘2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도 관리청에서 계선구역 지정 등을 통해 관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선박 검사증서를 반납한 모든 선박이 장기간 안전하게 계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5) 장기계류 선박 : 선박검사기관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청에 계선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

6) 「항만법」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현행법에 따른 계선신고 제도 비교]

구분	근거	허가 기간	종류	장소	사용료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법」 제41조	통상 7일 이하	선박정박 접안 부지 임대 등	모든 항만 구역	사용료 규정에 따른 입출항료, 정박·접안료
계선 신고	「선박입출항법」 제7조	6개월 이하	선박 계선	계선 구역	사용료 중 계선료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항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계선 신고 대상 선박을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2. 예선·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24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u>무역항</u> 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 13.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u>무역항의 수상구역등</u> ----- ----- ----- -----.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u>무역항</u> 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u>무역항별</u>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u>무역항의 수상구역등</u> ----- ----- -----. ----- ----- ----- -----.
	② ----- ----- <u>무역항의 수상구역 등별</u> ----- -----.
	1. -----

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수가 적합할 것

2. 3. (생략)

4.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공단인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④ 관리청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별 -----

2. 3. (현행과 같음)

4. -----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

③ -----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별 -----

-----.

1.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2.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④ -----

----- 수상구역등의 예선이 ---
----- 무역항의

수 있다.	수상구역등에 -----.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

나. 검토의견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항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법률의 적용범위를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항만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구역을 의미하고,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이외에도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⁷⁾

구분	항만시설의 종류	비고
무역항의 수상구역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상구역 내에 위치한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 등 수역시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무역항 수상구역 +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수역시설 *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구역 밖	예)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 따른 당진하력발전소 항만시설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부산항 계획도내 수상구역 및 수상구역 밖 현황]



※ 해양수산부

※ 붉은색 표기(한계선) 왼 쪽 : 수상구역에 해당
 붉은색 표기(한계선) 오른쪽 : 수상구역 밖에 해당

□ 또한, 현행법에서 예선이란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하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⁸⁾

-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그런데 현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인 부두에 출·입항하는 화물선을 지원하는 예선이 운용되고 있고, 실제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예선등록을 한 예선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예선 및 예선에 관한 규정이 예선·예선업의 등록 및 영업장소를 ‘무역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및 예선 현황]

(2024년 12월 기준)

관리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부두명)	부두 완공시기	항만시설 지정일*	예선 현황	
				예선등록	업무시작 시기
인천청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	‘03.8월	‘03.8.28	무역항*9)	‘03.8월
여수청	OKYC(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부두	‘12.10월	‘13.4.17	무역항	‘13.4월
마산청	안정 제1LNG부두	‘02.10월	‘19.1.15	항만구역밖**10) 항만시설	‘02.10월
	안정 제2LNG부두	‘12.9월	‘19.1.15	항만구역밖 항만시설	‘12.9월
	안정 소형LNG선적부두	‘19.11월	‘19.1.15	항만구역밖 항만시설	‘19.11월
대산청	당진화력발전소	‘98.3월	‘98.12.4	무역항	‘98.12월
동해청	안인화력부두	‘22.1월	‘22.12.28	무역항	‘24.1월

※해양수산부

9) 무역항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예선업활동

10)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만 예선업 활동

- 참고로, 현행법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2015. 2.3.)으로, 「선박입출항법」 제정('15.2.) 시 「선박입출항법」 제24조로 이관(분법)하면서 ‘항만’을 ‘무역항’으로 변경하는 제도 반영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개정안은 이에 대한 오류를 보완하려는 의의가 있다는 설명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시 「항만법」에 규정된 예선은 ‘항만에서’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離岸)·접안(接岸)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지칭하고, 예선업도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영흥화력발전소('03.8월 업무시작) 등 예선업자들이 항만구역 밖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설명임.

< 선박입출항법 제정 전후 예선업 등록 조문 비교 >

항만법[법률 제13274호, 2015.6.28.시행]	선박입출항법[법률 제13186호, 2015.8.4.시행]
제32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曳船業務)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이처럼 현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무역항 수상구역 + 수상구역밖의 수역시설)에서 예선 및 예선업을

하려는 자도 현행법에 따른 예선·예선업 규정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현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라 예선등록 기준(성능, 선령 등), 예선사용 기준(선박 규모별 예선마력) 등을 명확히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관리청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관리·감독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과 별도로 현행법 제25조에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 장소가 부족한 경우에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예선업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등록 제한하는 사유는 예선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청이 지정하는’ 장소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등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예선업 관리의 사각지대 방치를 해소하기 위해 예선업 활동 구역을 확대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